

[일련번호 : 22]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등록증 발급 대리신청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한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장애인 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를 적용하며, 보호자인 경우 주소지가 동일한 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 보완제출을 요구하고 보완 기간을 정해 기간 내 보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장애인 본인과 주소지가 다른 형제 또는 자녀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위임장 등을 보완요구하지 않고 총 2건의 신청서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등록증 대리발급 부적정 내역 - 세부내역 별도통보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